**「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법률, 2016.11.7., 개정]

**□ 개 요**

이 법은 여행자와 여행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여행시장 질서를 규범하고, 여행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여행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13년 4월 25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하였고,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등 12부 법률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고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행사는 비합리적인 저가로 관광활동을 조직해서는 아니 된다.

∙ 여행사는 부가사항 또는 쇼핑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기획된 일정을 여행사가 임의로 변경 또는 이행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이드와 인솔자는 반드시 여행사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개인적으로 가이드나 인솔 업무를 맡아서는 아니 된다.

∙ 가이드와 인솔자는 가이드 자격증을 지니고 업무활동을 하여야 한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总则****第二章　旅游者****第三章　旅游规划和促进****第四章　旅游经营****第五章　旅游服务合同****第六章　旅游安全****第七章　旅游监督管理****第八章　旅游纠纷处理****第九章　法律责任****第十章　附则** | **제1장 총칙****제2장 여행자****제3장 여행계획과 촉진****제4장 여행 경영****제5장 여행서비스 계약****제6장 여행 안전****제7장 여행 감독관리****제8장 여행 분쟁처리****제9장 법률 책임****제10장 부칙** |